

2022. 3. 16.(수) 10:00

제29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2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21.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단서 추가(안 제4조)
-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신설(안 제8조)
- 조문 정비(안 제9조~제15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 1. 21.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단서 추가
- 제8조에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신설
-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 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8조 ~ 제14조 (생략)	제9조 ~ 제15조 (현행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2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 1. 21.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포상대상, 포상방법을 규정 (안 제1조 ~ 제3조)
- 포상절차, 포상시기 및 인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수당지급 및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2022. 1. 21. 시행)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포상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제4조와 제5조에는 포상절차, 포상시기 및 인원을 규정
- 제6조에서 제7조에 수당지급 및 지급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무원으로서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등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군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인 추천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다.

② 사무국장이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연1회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2일

2. 제 출 자 : 신동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 및 「지방공무원법」(2022.1.21. 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 ~ 제3조)
-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등(안 제4조 ~ 제5조)
-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안 제6조 ~ 제7조)
- 지원사업 사무위탁 등, 경비의 지급 등(안 제8조 ~ 제9조)
- 지휘·감독, 협약해지 등(안 제10조 ~ 제12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
- 제4조~제7조까지 지원범위, 지원제외,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 제8조~제12조까지 지원사업 사무위탁, 경비의 지급, 지휘·감독, 협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 또는 편의증진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신청방법, 그 배정·제공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중증장애인공무원에 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때 하여야 할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 신청내용의 평가 및 그 배정·제공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입·차입 등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지원사업 사무위탁 등) ① 의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과 능력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전문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협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 전문기관에 그 위탁사무 수행계획 및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수탁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문서로써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의장은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약해지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 전문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 전문기관이 제8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 수탁 기관에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2일

2. 제 출 자 : 신동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상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규정(안 제8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윤리심사)에서 규정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에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정비
- 제8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

-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강조하기 위한“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다만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를 “다만,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로 한다.

제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의 선임 등은 제3조를, 간사의 선임 등은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고 임기 중에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 ④ 후반기에 새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의원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② (생략)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u>다만</u>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신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 <u>다만</u> , 의원----- _____ -----.
⑥ (생략)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조(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의 선임 등은 제3조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5항을, 간사의 선임 등은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신설>	제8조(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의 선임 등은 제3조를, 간사의 선임 등은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④ <신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고 임기 중에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⑤ (생략)	④ 후반기에 새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의원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2일

2. 제 출 자 : 김은영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안 제6조 ~ 제7조)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와 제6조에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조례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서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보조견의 출입 문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2.“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아 그를 붙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자, 관리인 및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건 동반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건 동반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자, 관리인 및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건 동반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보조건 동반 출입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조건 동반 장애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4. 주요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팀 신설
 - － ‘중대재해예방’신설 (안 제8조(건설도시국)제2항제2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 － 시행령 제75조 → 제73조 (안 제14조제1항)
 - － 시행령 제78조 → 제76조 (안 제21조제1항)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제8조제2항제2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하고자 함
 - 제14조제1항 중 시행령‘제75조’→‘제73조’
 - 제21조제1항 중 시행령‘제78조’→‘제76조’

○ 검토의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규정한“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건설도시국)제2항제2호 중“안전기획·사회재난·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를“안전기획·중대재해예방·사회재난·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로 한다.

제14조(설치)제1항 중“제75조”를“제73조”로 하고 제2항 중“옥포면”을“옥포읍”으로 한다.

제21조(설치)제1항 중“제78조”를“제7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도시국)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u>안전기획·사회재난·자연재난·하천 시설·하천관리</u> 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도시국)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u>안전기획·중대재해예방·사회재난· 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u> ----- --
제14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u>제75조</u>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 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u>옥포면</u> 비슬로 2040에 둔다.	제14조(설치) ① ----- ----- <u>제73조</u> ----- ----- ----- ----- ----- ----- ----- ② ----- <u>옥포읍</u> -----.
제21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u>제78조</u> 에 따라 원격지 주 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를 둔다.	제21조(설치) ① ----- ----- <u>제76조</u> ----- ----- -----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업무 대응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안 제2조)
 - －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지방공무원 정원 : 1,001명 → 1,003명
 - －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 984명 → 986명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별표 3]
 - － 총 정원 : 1,001명 → 1,003명
 - － 본청 정원 : 639명 → 641명
 -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조직개편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업무 대응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1,001명 → 1,003명
-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 984명 → 986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총수 조정
- [별표 3]에서 직급별 정원표 개정(총 정원: 1,001명 → 1,003명, 본청 정원: 639명→ 641명,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하고자 함

※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공무원 증원 2명(7급 1, 8급 1) 비용발생
2026년(5차년도)까지 인건비 비용 476,667천원 정도 소요 예상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3.8%로 산정 시)

○ 검토의견

-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각 호 외의 부분 중“1,001”을“1,003”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제1호 중“984”을“986”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 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 을 <u>1,001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984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003명</u> ----- -----. 1. ----- : <u>986명</u>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1,001 1,003	639 641	17	112	177	5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69 971	634 636	17	85	177	56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2	28	2	2	7	3
6급이하 계	918 920	600 602	14	82	169	53
연구직 계	3	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도직 계	27			27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5			25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라 정원 증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공무원 증원 2명(7급 +1, 8급 +1)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 연도별 비용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476,667천원정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476,667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476,667천원정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 입		88,358	91,716	95,201	98,819	102,573	476,667
지 방 세		88,358	91,716	95,201	98,819	102,573	476,667
의존재원							
세 출		88,358	91,716	95,201	98,819	102,573	476,667
인 건 비		88,358	91,716	95,201	98,819	102,573	476,667
재원 조달		88,358	91,716	95,201	98,819	102,573	476,66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균 비		88,358	91,716	95,201	98,819	102,573	476,667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사도의 5급 이하(사·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규정(안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을 규정(안 제3조)
-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안 제4조)
- 군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 등을 규정(안 제5조)
- 예산의 범위 내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협조 등을 규정(안 제6조)
- 위원회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을 규정(안 제7조)
-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 제작·공개, 백서 포함 내용 등을 규정(안 제8조)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5조 (2022. 1. 13.시행) 에서 조례에 위임한‘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과 예산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제4조에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등
- 제5조에는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 제6조에 위원회 예산,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
- 제7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을 규정
- 제8조와 제9조에 위원회 활동 결과 공개,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대구광역시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5조에
서 위임한 달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
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
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 또는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 15명 이내
-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의 투명성 및 활용도 제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 사항인 정책연구용역 공개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안 2조 ~ 3조)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5조 ~ 8조)
-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기준, 결과 공개 등 관리사항 규정(안 11조 ~ 18조)

5.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에 근거, 조례 위임 사항인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통한 지자체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함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책연구용역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기준, 용역실명제, 연구결과의 공개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요지



▶ **정책연구용역** : 정책개발·연구를 위한 용역으로서 학문에 관한 연구이므로 계약집행기준 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

【**적용범위 제외**】 - 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2.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용역
3. 국·시비 재원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용역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 15명 이내 구성(당연직(3), 위촉직 위원), 임기2년(연임)

▶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 검토의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달성군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 사후 관리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과 연구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달성군의 담당부서를 말하고, “예산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예산의 편성 등 그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달성군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달성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달성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의 실무검토만으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2.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3. 국·시비 재원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용역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를 끌어올림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달성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기획예산실장

다. 정책연구용역 수행 관련 소관 국장·소장·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2명

나.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 기준)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자신의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주관부서 국·소장, 실·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예정된 일정에 따른 연구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연구 용역검수)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자가 이행한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좋지 않은 연구자에게는 그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매우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달성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끌어올리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예산이 수립된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년 월 일)

우선순위	심의안건	심 의 결 과			심사의견	비 고
		원안가결	조건부인승	부결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 위원회 심위위원 모두 기재)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	-----

용역명	
-----	--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담당자	주관부서장	전 화	비 고

용역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역 개요	○ 용역명: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행 자: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 고
			○○팀장 주관부서장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치 사항	○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정책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주관부서장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입찰()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 주관부서장(소속 및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주관부서장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실 적 · 활용방안			
기대효과			

참고 1

관계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 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리 분리·신설

행 정 리	공동주택명 (세대수)	지 번	입주예정
서재14리	메가시티 태왕아너스(939)	서재리 902	`22. 03.
매곡21리	힐스테이트 다사역(736)	매곡리 637-6	`22. 05.

○ 공동주택 입주 및 여타 개발사업에 따른 다사읍 매곡1,2리 편입·
소멸 지번 정비 미비 및 실제 주민생활권 미반영

※ 매곡2리 연화마을 등 일부 지역이 실제 매곡1리 생활권으로 경계조정
필요(주민 건의사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13.)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라반 조정 : 2리 증(322리 ⇨ 324리), 22반 증(2,772반 ⇨ 2,794반)

읍·면	기 존		개 정		증감		이 장 정 수	비 고
	행 정 리	반 수	행 정 리	반 수	리	반		
다 사 읍	<신 설>		서 재 1 4 리 (메가시티태왕아너스)	13	1	13	1	
	<신 설>		매 곡 2 1 리 (힐스테이트다사역)	13	1	13	1	
	매곡1리	7	매 곡 1 리	4	—	△3		
	매곡2리	4	매 곡 2 리	3	—	△1		

○ 조문 수정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를 ⇨ “제7조”로 변경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리 분리·신설과 다사읍 매곡1,2리의 실제 주민생활권을 반영한 지번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사읍 서재14리, 매곡21리(2개리)와 26개반을 신설하고 매곡1,2리 4개반을 폐지(편입·소멸)하였으며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를 ⇨ “제7조”로 조문 변경

○ 검토의견

-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 급증과 실제 주민생활권을 반영하고자 리·반을 조정하는 것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별표2 중 다사읍 서재리란, 다사읍 매곡리란 및 다사읍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서재리	14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13리 서재14리

	매곡리	21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20리 매곡21리
다사읍 소계	11	63	63

별표3 중 다사읍 서재13리란 다음에 서재14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서재14리	제 1 반	서재리 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1동 201호~3601호, 202호~3602호
		2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1동 203호~3603호, 204호~3604호
		3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2동 201호~3701호, 202호~3702호
		4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2동 203호~3803호, 204호~3704호
		5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3동 201호~3701호, 202호~3802호
		6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3동 203호~3803호, 204호~3704호
		7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4동 201호~3201호, 202호~3302호
		8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4동 203호~3303호, 204호~3204호
		9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5동 201호~3601호, 202호~3602호
		10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5동 203호~3703호, 204호~3604호
		11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6동 201호~3301호, 202호~3302호, 203호~3303호
		12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106동 204호~3304호, 205호~3205호
		13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 태왕아너스 오피스텔) 201동 201호~2101호, 102호~2102호, 103호~2103호, 204호~2104호

별표3의 다사읍란 중 매곡1리란 및 매곡2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매곡1리	제 1 반	491~505, 557-3, 558-2,559~564, 635-3, 645, 669, 670-2~674, 681~683, 686~687-1, 730~734, 737~762(747, 759, 761제외), 779~786(780제외), 888~891, 1291-41~1291-45
		2	407~411, 435~461, 464~465, 479-1~482, 483-3,483-7, 484-3, 484-9, 485-3, 486-4~486-7, 487-4, 693-1~695-1, 1299-4
		3	675~680,681-2~681-3, 682, 683-2~685, 686-2, 688~692, 693-3 698~716(699-3~699-8제외), 719(719-1,719-2, 719-26 제외), 720-3~729(726 제외), 885~887, 892~926(902, 920 제외), 957, 971, 산94 (다사읍사무소에서 온천골까지 북부노인복지관 주변, 매곡정수장 사택)
		4	1072-1~1088, 1099~1105,1218~1248 (매곡정수장맞은편 미소마을주변)
	매곡2리	제 1 반	158-9, 229-7~233, 233-5~236, 257~263, 265~305(302,302-1제외), 699-3~699-8, 1275-1, 1277-4 (다사농협앞뒤주변)
		2	228-1~228-10, 229-5, 233-1, 233-2, 1544~1545 (다사교회주변, 동의센트럴파크)
		3	306-1~306-8, 313~396-3, 1515-3, 1516~ 1519 (대복카센터뒤, 창대교회뒤)

별표3 중 다사읍 매곡20리란 다음에 매곡21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매곡21리	제 1 반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1동 201호~2801호, 202호~2802호
		2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1동 203호~2903호, 204호~2904호
		3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2동 201호~2701호, 202호~2702호
		4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2동 203호~2603호, 204호~2604호
		5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3동 101호~1601호, 102호~1602호, 203호~1603호
		6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3동 1701호~3301호, 1702호~2602호, 1703호~1903호, 2103호~3303호
		7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4동 101호~1601호, 202호~1602호, 103호~1603호
		8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4동 1701호~3301호, 1702호~3302호, 1703호~1903호, 2103호~3303호
		9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5동 201호~2901호, 202호~3302호
		10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5동 203호~1903호, 2103호~3303호, 204호~1904호, 2104호~3204호, 205호~3205호
		11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6동 101호~3201호, 302호~1902호, 2102호~3202호
		12	매곡리637-6(힐스테이트 다사역) 106동 203호~1903호, 2103호~3203호, 104호~3204호
		13	매곡리637-6(힐스테이트다사역오피스텔) 201동 201호~1901호, 2101호~3301호, 202호~1902호, 2102호~330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조 ----- ----- ----- -----.

【별표2】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박곡리	1	박곡리		박곡리	1	박곡리
	방천리	1	방천리		방천리	1	방천리
	서재리	13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13리		서재리	14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13리 서재14리
	세천리	7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7리		세천리	7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세천7리
	죽곡리	13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리	13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죽곡12리 죽곡13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죽곡12리 죽곡13리
	매곡리	20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20리		매곡리	21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9리 매곡20리 매곡21리
	부곡리	1	부곡리		부곡리	1	부곡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산리	1	문산리		문산리	1	문산리
다사읍 소계	11	61	61	다사읍 소계	11	63	63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신설〉			다사읍	서재14리	제1반	서재리 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1동 201호~3601호, 202호~3602호
						2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1동 203호~3603호, 204호~ 3604호
						3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2동 201호~3701호, 202호~ 3702호
						4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2동 203호~3803호, 204호~ 3704호
						5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3동 201호~3701호, 202호~ 3802호
						6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3동 203호~3803호, 204호~ 3704호
						7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4동 201호~3201호, 202호~ 3302호
						8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4동 203호~3303호, 204호~ 3204호
						9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5동 201호~3601호, 202호~ 3602호
						10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5동 203호~3703호, 204호~ 3604호
						11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6동 201호~3301호, 202호~3302호, 203호~ 3303호
						12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106동 204호~3304호, 205호~3205호
						13	서재리902번지(메가시티태왕아너스 오피스텔) 201동 201호~2101호, 102호~2102호, 103호~2103호, 204호~2104호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다사읍	매곡1리	제1반	489~500, 660~665, 671-1, 688,	다사읍	매곡1리	제1반	491~505, 557-3, 558-2, 559~564, 635-3, 645, 669, 670-2~674, 681~683, 686~687-1, 730~734, 737~762 (747, 759, 761제외), 779~786(780제외), 888~891, 1291-41~1291-45
		2	640, 652~659-1, 733~743			2	407~411, 435~461, 464~465, 479-1~482, 483-3, 483-7, 484-3, 484-9, 485-3, 486-4~486-7, 487-4, 693-1~695-1, 1299-4
		3	744~786			3	675~680, 681-2~681-3, 682, 683-2~685, 686-2, 688~692, 693-3, 698~716(699-3~699-8제외), 719(719-1, 719-2, 719-26 제외), 720-3~729(726제외), 885~887, 892~926(902, 920 제외), 957, 971, 산94 (다사읍사무소에서 온천골까지 북부노인복지관 주변, 매곡정수장 사택)
		4	624~650-1(640제외)			4	1072-1~1088, 1099~1105, 1218~1248 (매곡정수장맞은편 미소마을주변)
		5	521-1~621(522제외), 829~839				<삭제>
		6	689~692, 698~729, 885~898, 950-5~955				<삭제>
		7	산64-1, 산94				<삭제>
	매곡2리	제1반	158-8, 28-1~265-4(244제외), 300-3~322(302, 302-1 제외)		매곡2리	제1반	158-9, 229-7~233, 233-5~236, 257~263, 265~305 (302, 302-1제외), 699-3~699-8, 1275-1, 1277-4 (다사농협앞뒤주변)
		2	1520~1527-12, 1544~1545-4			2	228-1~228-10, 229-5, 233-1, 233-2, 1544~1545 (다사교회주변, 동의센트럴파크)
		3	405-1~488-6(473제외), 1515~1519-2			3	306-1~306-8, 313~396-3, 1515-3, 1516~1519 (대북카센터뒤, 창대교회뒤)
		4	693~697, 1072-1~1088, 1099-1~1160-1, 1164-6, 1204~1205, 1211-1~1246-3, 1258, 1275-1				<삭제>

현행				개정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신설〉			다사읍	매곡21리	제 1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1동 201호~2801호, 202호~2802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1동 203호~2903호, 204호~2904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2동 201호~2701호, 202호~2702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2동 203호~2603호, 204호~2604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3동 101호~1601호, 102호~1602호, 203호~1603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3동 1701호~3301호, 1702호~2602호, 1703호~1903호, 2103호~3303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4동 101호~1601호, 202호~1602호, 103호~1603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4동 1701호~3301호, 1702호~3302호, 1703호~1903호, 2103호~3303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5동 201호~2901호, 202호~3302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5동 203호~1903호, 2103호~3303호, 204호~1904호, 2104호~3204호, 205호~3205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6동 101호~3201호, 302호~1902호, 2102호~3202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106동 203호~1903호, 2103호~3203호, 104호~3204호 매곡리637-6번지(힐스테이트다사역 오피스텔) 201동 201호~1901호, 2101호~3301호, 202호~1902호, 2102호~3302호

참고 1

행정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신 설

서재14리(서재리 902번지 일원, 메가시티 태왕아너스)



행정리 경계변경 매곡1·2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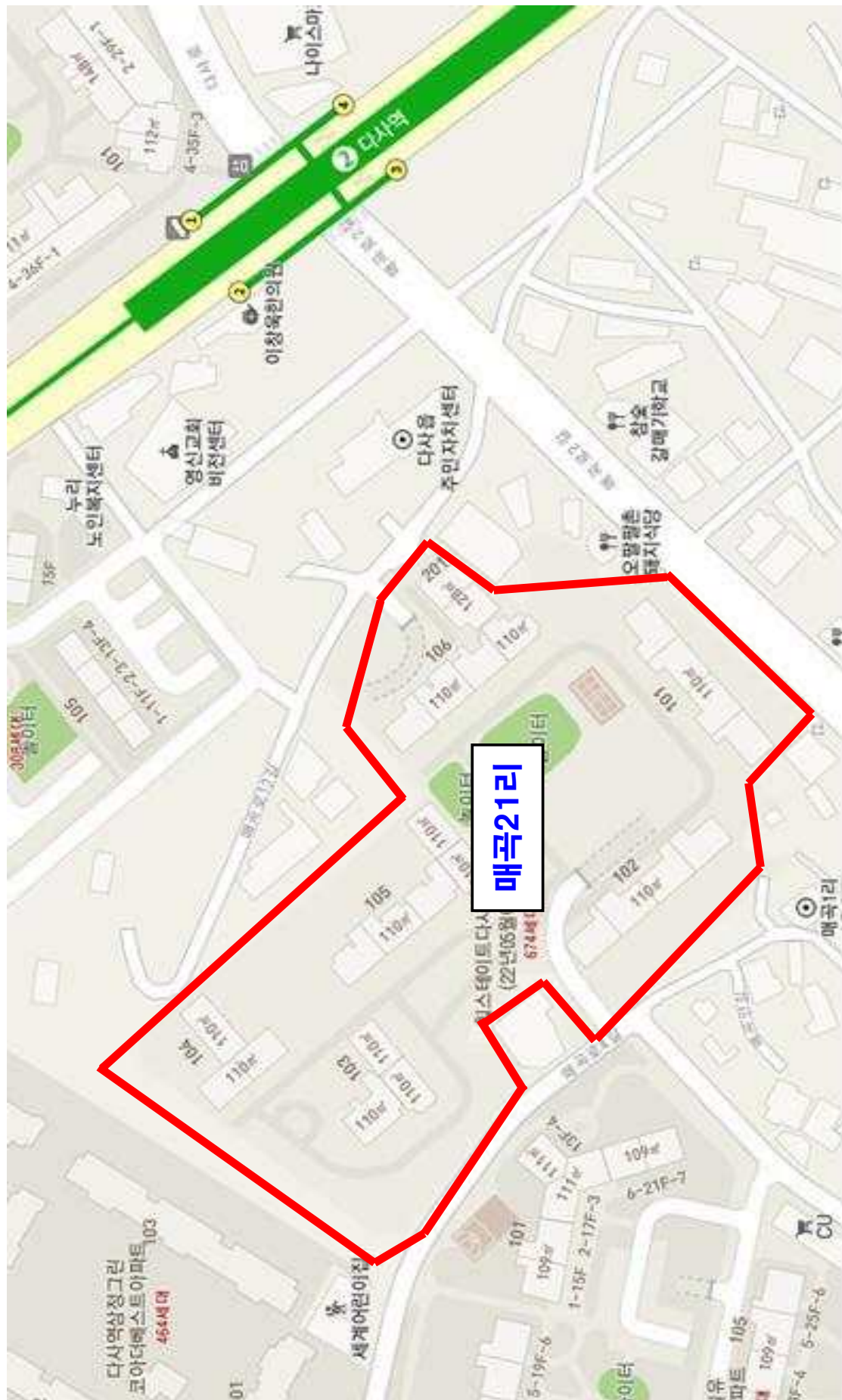


행정리 경계변경 매곡1·2리(2)



신 설

매곡21리(매곡리 637-6번지 일원, 힐스테이트 다사역)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함으로써 건축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적용의 완화 규정(안 제3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4조)
-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안 제5조)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규정(안 제19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규정(안 제21조)
- 가설건축물 규정(안 제22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안 제24조)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안 제30조)
- 대지안의 조경 규정(안 제33조)
- 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안 제35조)
- 도로의 지정 규정(안 제37조)
- 대지안의 공지 규정(안 제39조)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안 제4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안 제42조)
-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규정(안 제43조)
-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안 제44조)

5. 관계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안

○ 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행정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적용의 범위, 적용의 완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
- 제5조에서 제17조까지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절차, 위원장 등의 직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회의운영, 비밀준수, 수당 등 규정
- 제18조에서 제28조까지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가설건축물 기준, 건축물의 사용 승인, 공사감리자의 지정,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축허가표지판 등을 규정
- 제29조에서 제32조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와 보수기준을 정함
- 제33조에서 제37조에는 대지안의 조경, 식재 등 조경기준, 공개공지 등의 확보,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38조에서 제41조에는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맞벽건축 가능 구역 및 기준을 정함

- 제42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제43조, 제44조에 옹벽 등 공작물예의 준용,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완화·가중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건축법 제87조의3제2항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조성 등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인구 50만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020.12.22. 건축법제82조의 2 개정) - 대구시, 달서구 설치 의무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닌 관계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과 도서관,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은 제3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

당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9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소방·전기 및 기계설비·정보통신·전통건축·에너지·도시계획·교통·토목·조경·미술(디자인)·방재·범죄예방·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나.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분양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법 제4조의4에 따른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한다)
 7. 그 밖에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군수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③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축심의신청서와 간략설계도서(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단면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도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 및 건축심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 5명 이상 2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한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그 다수인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심의 신청인으로부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시켜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회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8월 이상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0월 이상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12월 이상

④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그 연면적의 합계가 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

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한 노외주차장의 차광용 철주천막
3. 비닐 또는 유리온실구조의 화초소매점
4.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5호의 가설건축물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개별입지 공장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중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에 대한 자문결과를 첨부(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가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에 대하여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 신청인과 업무대행건축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업무대행건축사는 군수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업무에 착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칙 제21조제1항의 각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건축사 대행업무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군수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4조제9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사람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
4. 업무대행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로 선정 제외를 요청한 사람
5. 현장조사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대행수수료 이외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등 현장조사업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

⑦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4조제9항에 따라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의 제외를 요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외 요청을 받은 즉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해 치료 또는 입원하게 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하게 된 경우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⑧ 군수는 업무대행건축사 선정에 관련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선정에 관련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경우, 군수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선정이 필요하면 협회에 선정을 의뢰하며, 협회는 지체없이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감리자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군수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시
2. 국내·외 장기 출장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등이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 및 처분결과 등을 군수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건축법·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을 폐업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④ 군수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회에 공사감리자 선임을 의뢰하고, 협회는 지체없이 공사감리자를 선임하여 군수에게 통보하며, 군수는 공사감리자를 확정·지정하여 지정신청이 접수된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군수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27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X : 당해금액 X_1 : 큰금액 X_2 : 작은금액

Y : 당해금액 Y_1 : 작은금액요율 Y_2 : 큰금액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9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날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에서 영 제 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2.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령으로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건축물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용자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115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해체 및 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 마감재료의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30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
9.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③ 군수는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 조성 재원을 포함하여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 산하에 근무하는 건축직류의 공무원 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 연면적

의 합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3. 상업지역내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
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
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수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
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
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
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 등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은 시설면적의 2분의 1로 한다.

4. 공개공지 등에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 부분에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며, 최대 완화기준은 해당 기준의 1.2배까지로 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1 + (\text{공개공지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text{「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0조에 따른 용적률}$

2. 높이제한의 완화 : $[1 + (\text{공개공지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text{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 등의 1개소의 면적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⑥ 공개공지 등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실태 및 위법발생 등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영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그 밖에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제3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상업지역내 하나의 대지에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가 걸치는 경우 최저고도지구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되더라도, 군수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최저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3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41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단, 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4. 군수가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또는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4배 이하

④ 법 제61조제2항과 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

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0.8배) 이상

제9장 보칙

제43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높이 10미터 이상의 호이스트, 높이 6미터 이상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유류 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연 2회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완화 및 가중)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완화기준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 및 제6의2호의 경우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③ 군수는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의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2.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1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금 액	
	구 분	수 수 료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백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 비고 :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해당 군수의 수입증지로 한다.
 3. 대수선 및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단, 단독주택일 경우 4천원으로 한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분의 5를 적용한다.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 (제25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주거용은 660㎡) 미만	대가기준의 2.8%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3.7%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6% 이상 금액
495㎡(주거용은 660㎡) 이상 1천㎡ 미만	대가기준의 4.3%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5%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8.4% 이상 금액
1천㎡ 이상 2천5백㎡ 미만	대가기준의 5.5%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7.3%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9.1% 이상 금액
2천5백㎡ 이상 5천㎡ 미만	대가기준의 6.8%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4.1%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1.4% 이상 금액
5천㎡ 이상 7천5백㎡ 미만	대가기준의 8.2%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9%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3.7% 이상 금액
7천5백㎡ 이상 1만㎡ 미만	대가기준의 9.6%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7.8%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6.0% 이상 금액
1만㎡ 이상 2만㎡ 미만	대가기준의 11%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4.6%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98.2% 이상 금액
2만㎡ 이상 3만㎡ 미만	대가기준의 12.4%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1.4%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10.5% 이상 금액
3만㎡ 이상 5만㎡ 미만	대가기준의 13.7%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8.2%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2.7% 이상 금액
5만㎡ 이상 7만㎡ 미만	대가기준의 14.6%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2.7%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30.9% 이상 금액
7만㎡ 이상 10만㎡ 미만	대가기준의 15.5%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7.2%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39.1% 이상 금액
10만㎡ 이상	대가기준의 16.4%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1.8%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47.3% 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노임단가(건설 및 기타)를 적용.
2. 직접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직접경비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에서와 같이 일괄 100,000원 적용.
3. 대가기준 : 직접비 + 제경비 + 기술료
 예) 495㎡(주거용은 660㎡) 미만(2017년도 기준)

○ 직접인건비 = 351,417원(기술사노임단가)

○ 직접비 = 직접인건비+직접경비 = 351,417+100,000 = 451,417원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20% = 351,417×120% = 421,700원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351,417+421,700)×20% = 154,623원

⇒ 직접비+제경비+기술료 = 451,417원+421,700원+154,623원 = 1,027,794원

☞ 허가 전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 1,027,794 × 2.8% ≒ 28,778 ≒ 28,000(부가세 별도)

☞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 1,027,794 × 24.6% ≒ 252,837 ≒ 252,000(부가세 별도)

4.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35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학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운동시설 및 장례식장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3면 이상 접하고 있는 경우 : 1.5미터 이상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 접하고 있는 경우 :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5가구 이상), 고시원(5실 이상)	- 1미터 이상
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적 용 의 완 화 요 청 서					
건 축 주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역	지 구	지구	
	지 목		면 적	m ²	
용 도		구 조		공사종류	
규 모	건축면적	m ²	연 면 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륜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적용의 완화 요청 내용					
적용의 완화 요청 사유					
「건축법」 제5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적용의 완화를 요청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주변현황을 표시하는 서류 (사진등을 포함) 1부 2. 기본 설계도서 3.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한 구비서류				

[별지 제2호서식]

건 축 심 의 신 청 서						
건축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리 번지					
건 축 주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지 역 · 지 구		지역 지구				
건 축 개 요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 면 적	m ²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
	구 조				용적률	%
	공사종별				건물용도 : (층별면적 및 용도)	
	최고높이					
	조경면적	법정	m ² , 설치	m ²		
	주차대수	계	대, 옥외	대, 옥내	대, 기계	대
	도 로 폭	전면	m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측면	m				
설 계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사무소명	(전화)				
「건축법」 제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제6조제3항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건 축 허 가 표 지 판 허가번호 : 0000-00-00000			
공 사 명	○○ 신(증·개)축공사		
허 가 일 자	년 월 일		
대 지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주 용 도		층 수	지하○층, 지상○○층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건 축 주	○○○ (전 화)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대표 ○○○ (전 화)		
시 공 사	○○건설(주) 현장대리인(소장) ○○○ (전 화)		
감 리 자	○○건축사사무소 책임감리원 ○○○ (전 화)		
관 련 부 서	달성군청 ○○과 (전 화)		

비 고 : 이 표지판은 현장 여건을 감안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정보 공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법을 보완하여 정보공개 주체와 범위를 지정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1. 1. 12.)으로 「정보공개법」을 보완하여 정보공개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정보 공개 근거 규정 신설
 -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로 조문 정비
- ☞ [참고 1, 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4835(2021.12. 9.)호 및 대구시 정책기획관-15326 (2021.12.15.)호 “자치법규 제·개정 표준안”

○ 검토의견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 정보공개 원칙 및 범위, 공개자료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참고자료(1. 2) 각 1부.
2)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참고 1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신구조문대비표

□ 지방자치법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참고 2

자치법규 제·개정 표준안

□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 및 같은 법 시행령과 「 <u>지방자치법</u> 」 제26조에 따라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행정 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과 <u>「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u> _____ _____ _____ _____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2021. 1. 12. 전부개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폐지사유

-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폐지 대상
- 조건이 유리한 중앙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실적이 수년간 전무한 상태로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 －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 점차적으로 조건이 유리한 중앙대출제도 및 정부 사회보장사업의 시행으로 최근 수년간 융자금 대출신청이 전혀 없음으로 사업존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 검토의견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근거가 미약한 유사·중복사업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2022 - 14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3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 시설의 이용·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1조)
-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8조)

5.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제정이유

- 달성군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규정
- 제4조와 제5조에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관리·운영, 업무 및 기능 등
-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사용에 관한 사항
- 제22조에서 제30조까지 위탁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달성군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의 명칭은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56길 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제22조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 이용자가 체험료, 수강료 등 시설의 이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운영자”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산을 활용한 안보교육 및 홍보·전시·교육·체험·판매·휴게
4.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용역 수행
5. 그 밖에 시설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설의 목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그 성비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따른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설의 기본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결정을 포함한 시설 운영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사용

제13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시설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신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이용료를 징수할 때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④ 이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6조(이용료의 감면)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④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료의 반환) 프로그램의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1회에 한하여 사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제2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6. 사용허가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제5장 위탁운영·관리

제2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2.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시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및 수탁 받은 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의 목적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26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다음 연도의 시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이용료 상한액	비고
체험프로그램	1회당	30,000원	1회는 2시간 이내
· 위 상한액 범위에서 개별 프로그램 이용료는 제6조에 따른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1회 이용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시간 이내마다 개별 프로그램 이용료의 1/2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음			

[별표 2]

이용료 등 반환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정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프로그램을 할 수 없거나 이용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또는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한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총 이용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이용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비고 : 총 이용시간은 개별 프로그램의 예정 총 이용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기까지 경과된 이용시간이 총 이용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

참가 신청서

성명		성별	남 / 여	주소 (학교)		
생년월일		직업 (학년)		연락처		
신청 프로그램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참가 접수증

성명		주소 (학교)				이용 및 프로그램 내용
생년월일		직업 (학년)		성별	남 / 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						

※ 접수증은 전산에 의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 도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			
⑥ 대부(사용허가)기간 :					
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구 조 :
- 면 적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사용허가 공유재산의 표시]

소재지 :

사용허가 할 부분 :

위 사용허가 공유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자 달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허가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을 정한다.

제1조(사용목적) “을”은 재산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연간사용료)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정하되 그에 미치지 않는 경우 월할 계산에 의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결정 통지한다.

제4조(납기 등) ①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해당 연도 사용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료의 반환) ①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에서 “을”이 재산 사용을 종료한 기일까지의 사용료를 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되, 그 계산방법은 제3조제1항을 따른다.
② “갑”이 제10조제2호부터 같은조제5호까지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연장, 감면요청) ①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달성군에 책임 있는 사유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을”이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책임)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보험가입) “을”은 재산에 대하여 달성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을”은 “갑”이 납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재산을 인도받은 후 발생한 공과금 등을 체납한 때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재산을 사용목적에 이용하지 못할 사정에 처한 때
5. 그 밖에 본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1조(사용허가취소 요청) ① “을”은 사용허가기간 중이라도 “갑”에 대하여 본 사용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이 전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일 2월 전까지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취소일은 위 서면을 제출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에서 제2항에 따른 취소일까지의 사용료를 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되, 그 계산방법은 제3조제1항을 따른다.

제12조(원상회복의무)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여 반환하여야하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을”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일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공과금 등의 납부) “을”은 “갑”이 별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의 부담) 사용기간 만료 후에 “갑”이 계속하여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을”이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법령 준용) 본 허가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본 사용허가가 원만히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허가조건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허 가 자(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수허가자(을)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지 발굴·선양에 관한 사항
6.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